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소유자
3	창녕군 유어면 세진리	415-2	답	3,988	조성구
4	창녕군 유어면 세진리	415-3	잡	2,328	국세청
5	창녕군 유어면 세진리	415-4	답	2,907	국(재정경제부)
6	창녕군 유어면 세진리	415-5	답	2,533	국(재정경제부)
7	창녕군 유어면 세진리	415-6	답	2,593	조상구
8	창녕군 유어면 세진리	416	구거	3,466	국(농수산식품부)
9	창녕군 유어면 세진리	417	답	1,719	조상구
10	창녕군 유어면 세진리	417-1	답	3,059	조정일
11	창녕군 유어면 세진리	417-2	답	3,056	성기순
12	창녕군 유어면 세진리	418	답	3,018	성기순
13	창녕군 유어면 세진리	418-1	답	3,554	성기순
14	창녕군 유어면 세진리	418-2	답	1,320	조재구
15	창녕군 유어면 세진리	418-3	답	5,552	하영실
16	창녕군 유어면 세진리	419	도	1,000	국(농수산식품부)
17	창녕군 유어면 세진리	420-1	답	1,522	조상구
18	창녕군 유어면 세진리	420-2	답	893	성기순
19	창녕군 유어면 세진리	420-3	답	2,889	성기순
20	창녕군 유어면 세진리	420-4	답	697	성기순
21	창녕군 유어면 세진리	421	답	3,036	조정옥
22	창녕군 유어면 세진리	421-1	답	2,005	신영진
23	창녕군 유어면 세진리	421-2	답	4,004	신영진
24	창녕군 유어면 세진리	421-3	답	582	성기순
25	창녕군 유어면 세진리	421-4	답	1,773	성기순
26	창녕군 유어면 세진리	955	구거	2,785	국(농수산식품부)
합계				62,940	

7. 관 리 청 : 환경부(낙동강유역환경청)

8. 지정년월일 : 2012년 2월 일

9. 지형도 : 도면 게재 생략

-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서 열람가능하며, 환경부 자연정책과,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, 경상남도 환경정책과, 창녕군 환경위생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10. 기타

-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된 지번이 합쳐지거나 분할될 경우 동 지번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.

●환경부고시제2012-16호

「습지보전법」 제8조에 따라 우포 습지보호지역의 지정구역 변경을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변경 고시합니다.

2012년 2월 8일

환 경 부 장 관

우포 습지보호지역 변경

1. 지역의 명칭 : 우포 습지보호지역

2. 근 거 법 령 : 습지보전법 제8조

3. 변경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: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소야리 일원(6,722㎡)

연번	토지소재지	지 번	지 목	면 적(㎡)	소유자
1	창녕군 대합면 소야리	943	전	755	사(박수철)
2	창녕군 대합면 소야리	943-1	제	15	국(국토부)
3	창녕군 대합면 소야리	946	전	2,243	사(김균일)
4	창녕군 대합면 소야리	947	전	1,441	사(박일복)
5	창녕군 대합면 소야리	948	전	883	사(황재영)
6	창녕군 대합면 소야리	766	전	1,385	사(박경석)
합 계				6,722	

사-사유지, 국-국유지

4. 변 경 사 유 : 우포늪의 멸종위기종 등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포늪 주변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

5. 변경지정 후 총면적 : 8,547km² (최초 지정면적 : 8,540km²)

6. 변경연월일 : 2012년 2월 일 (최초 지정일 : 1999년 8월 9일)

7. 관 리 청 : 환경부(낙동강유역환경청)

8. 지형도 : 도면 게재 생략

○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서 열람가능하며, 환경부 자연정책과,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, 경상남도 환경정책과, 창녕군 환경위생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

9. 기타

○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된 지번이 합쳐지거나 분할될 경우 동 지번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.

●환경부고시제2012-18호

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(환경부 고시 제2011-130호, 2011. 9. 6.)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· 고시합니다.

2012년 2월 8일

환 경 부 장 관

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
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4호 하단의 ‘저탄소상품’을 ‘저탄소제품’으로 한다.

제6호 중 ‘저탄소상품’을 ‘저탄소제품’으로 하고, ‘저탄소상품 인증’을 ‘저탄소제품 인증’으로 한다.

제7호 중 ‘저탄소상품 인증지침’을 ‘저탄소제품 인증지침’으로 하고, ‘최소탄소배출량’을 ‘탄소배출량’으로 한다.

제6조 제1항 제2호 중 ‘저탄소상품인증’을 ‘저탄소제품인증’으로 한다.